대통령령 제 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인적사항"을 "성명, 연락처, 주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2.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 계좌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에서 제외한다.
- 3. 제3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제출기간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한 내에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의 종료를 결정한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사유
-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기 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제16제1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있습니다."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를 "210mm×297mm[백상지 80g/m²]"로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에 따른 지급정지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는 이 영 시행당시 피해자가 제3조제1항단서에 따라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후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생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좌동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	2
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	
자의 <u>인적사항,</u> 피해내역 및 신청	<u>성명, 연락처, 주소,</u>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	
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생략	③ 좌동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	
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를 말한다.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
	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된 사기이
	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
	용계좌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
	제1항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을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

	차 종료에서 제외한다.
	3. 제3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제출기간을 통지하였으
	나, 피해자가 그 기한 내에 제3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
	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	② <u>제1항제1호</u>
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	
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의
	종료를 결정한 경우 금융회사는 금
	융감독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u> &lt;신 설&gt;</u>	제10조의1(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
	호의 이용중지 등)_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
	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
	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
	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
	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

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 <u>2. 이의신청의 사유</u>
-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 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 본문 및 단서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피해구제신청서 피해구제신청서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백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 색상이 어두 접수번호 접수번호 성 명 <u>주민등록번호</u> 성 명 생년월일 피해자 주소 피해자 주 수 저히버ㅎ 전화번호 휴대전화변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변호 전자우편주소 개설정포 예금종볔 개설정포 예금종볔 금융회사 금융회사 피해자 계좌의 피해자 계좌의 계좌번호 명의인 계좌번호 명의인 송금 • 이체내역 송금 • 이체내역 송금 • 이체일시 송금・이체일시 금액 금액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입금내역 입금내역 금액 입금일시 입금일시 금액 피해환급금 피해환급금 금융회사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계좌번호 명의인 입금계죄 입금계좌 피해구제 신청사유 피해구제 신청사유 「전기통시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화급에 관한 특별번,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신 설> ※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제1호에 의 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 ○ ○ 금융회사 귀하 1.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1.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2.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금융회 첨부서류 2.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금융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사가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가 요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급정지요청서 지급정지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피해자 피해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정 보 정 보 예금종별 예금종별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명의인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명의인 송금・이체 일시 송금ㆍ이체 일시 금액 금액 지근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지근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정지 정지 입금일시 개설점포 금액 입금일시 개설점포 금액 요청 요청 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금융회사 계좌번호 명의인 피해금 피해금 인금일시 점포 금액 인금일시 점포 금액 이전 이전 계좌 출금일시 점포 금액 계좌 출금일시 점포 금액 지급정지 요청사유 지급정지 요청사유 기타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기타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월 월 일 일 년 금융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 ○ ○ 금융회사 귀하 ○ ○ ○ 금융회사 귀하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천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_ 제3조제1항 본문)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m²]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전	수일자
	피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계좌 현황 (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 피해금액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개시공고 요청 관련 정보
사기이용계좌 현황	
(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	
소멸대상 채권의 금액	
지급정지 조치 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 귀하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3.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이의제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	는번호 접수일자					
	성 명				<u>주민등</u> 록	<u>록번호</u>
신청인	주 소				1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급 정지	금융회사			개설점포		예금종별
계좌	계좌번호					명의인
이의제	기 사유(구체적	으로 기	재합니디	<del> </del>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 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O **금융회사** 귀하

 첨부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서류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u> </u>	접수	일자		
			피해자 정보		
성명	<u>생년월</u> 일	일_	피해자계좌 현황 (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계좌번호 등)	피해금액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
			개시공고 요청 관련 정보		
사기이	용계좌 현	황			
	사, 예금종 계좌번호 ·				
소멸대성	상채권의 금	글액			
지급정	지 조치 일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귀하

금융감독원

첨부

서류

1.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3.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1부(「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 이의제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	호	접수일	자			
	성 명			<u>생년월일</u>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급 정지	금융회사			개설점포		예금종별
계좌	계좌번호					명의인

이의제기 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 래 제한 또는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OOO 금융회사 귀하

 첨부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서류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없음

신청인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피해구제 취소신청서 피해구제 취소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취소 피해구제 신청일자 피해구제 신청일자 취소 신청 시청 내용 송금・이체 일시 금액 내용 송금・이체 일시 금액 취소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취소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합니 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합니 웤 잌 웤 잌 (서명 (서명 신청인 성명 신청인 성명 또는 인) 또는 인) OOO **금융회사** 귀하 OOO **금융회사** 귀하 첨부서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첨부서류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1부 없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210mm×297mm[백상지 80g/m²]